

Korean

Title 8
Department of Education

Subtitle 2
Education

Part 1
Public Schools

Chapter

Student Misconduct,
Discipline, School Searches
and Seizures, Reporting
Offenses, Police Interviews
and Arrests, Restitution
for Vandalism, Complaint
Procedure and Investigation
of Discrimination, Harassmen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Bullying and/or Retaliation

19

HAWAII 주 행정 규칙

타이틀 8

교육부

서브타이틀 2

교육

파트 1

공립 학교

챕터 19

학생 비행, 징계, 학교 수색 및 몰수, 위반 행위의 보고, 경찰 조사 및 체포,
기물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및/또는 보복에
대한 민원 절차 및 조사

서브챕터 1 총칙

- §8-19-1 근본이념
- §8-19-2 정의
- §8-19-3 적용례
- §8-19-4 분리성
- §8-19-4.1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서브챕터 2 정규 학년도 동안 학생 비행 및 징계

- §8-19-5 징계 조치; 권한
- §8-19-6 금지된 학생 행동; 학급 내 위반 행위
- §8-19-7 위기 퇴장
- §8-19-7.1 조사
- §8-19-8 정학
- §8-19-9 십일 초과 정학, 징벌적 전학 및 퇴학에 대한 정당한 절차
- §8-19-10 징계 조치 기간
- §8-19-11 학생이 본 챕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공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활동 및 기타 지원

서브챕터 3 여름 학교에서의 학생 비행 및 징계

- §8-19-12 징계 조치; 권한
- §8-19-13 금지된 학생 행동; 학급 내 위반 행위

서브챕터 4 학교 수색 및 몰수

- §8-19-14 학생 로커 공개 및 조사에 관한 정책
- §8-19-15 일반적 학교 수색 및 몰수에 관한 정책
- §8-19-16 권한
- §8-19-17 일반적 학교 수색 및 몰수 규정이 집행될 수 있는 조건
- §8-19-18 금지된 수색 및 몰수

서브챕터 5 위반 행위의 보고

- §8-19-19 교내에서의 A 등급 및 B 등급 위반 행위의 보고
- §8-19-20 위반 행위 보고에 대한 면책
- §8-19-21 교내에서 발생한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행위 보고의 실패; 그에 대한 결과

서브챕터 6 경찰 조사 및 체포

- §8-19-22 학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교내 경찰 수사
- §8-19-23 학교 무관 위반 행위에 대한 교내 경찰 수사
- §8-19-24 교내에서 경찰의 체포

서브챕터 7 기물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

- §8-19-25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
- §8-19-26 기물 파손에 적용되는 절차
- §8-19-27 폐지
- §8-19-28 폐지
- §8-19-29 폐지

서브챕터 8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및/또는 보복에 대한 민원 절차 및 조사

- §8-19-30 민원 절차
- §8-19-31 조사
- §8-19-32 지속적 조사
- §8-19-33 언어 지원, 문서 작성 지원, 또는 기타 장애인 지원
- §8-19-34 보복 금지
- §8-19-35 기타 구제책을 구할 권리

준거 규칙에 관한 메모: 본 챕터 규정의 상당 부분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규칙 21, 학생 징계 관련” [Eff 3/28/64; am 11/29/73; am 5/01/76; R 9/1/82]; “규칙 3, 학교 일과 시간 내 학생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체포 관련” [Eff 9/23/63; am 6/20/77; R 9/1/82]; “규칙 24, 교내 학생 흡연 관련” [Eff 3/28/64; R 9/1/82]에 근거하여 작성됨.

서브챕터 1

총칙

§8-19-1 근본이념. (a) Hawaii 주는 주 전역에 걸친 공교육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지원한다. 학교 출석을 의무화하는 교육 방침에 따라 학생은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교육부는 정규 학년도 동안 제공된 교육에 더하여 본인 부담을 통한 여름 학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적인 수업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교육부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1) 학생에게 이상적인 학습 환경 제공;
- (2) 학생 수업에 적절한 자격 있는 교사 선택; 및

(3) 기타 학생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선택.

1996년, 교육부는 포괄적 학생 지원 시스템(CSSS)으로 알려진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협력적 개혁 추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높은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업적 지원 및 서비스와 사회적, 감정적, 물리적 환경 지원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를 도모하였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온 성과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학생, 교사, 가족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CSSS 커뮤니티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체계 수립의 목적은 안전하고 배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질서 있는 교습 및 학습 환경 아래에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b) 모든 학생은 교육부 제공 교통수단을 사용할 시, 또는 교육부 후원 활동을 교내외에서 수행하는 동안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며 차별하지 않고 안전하며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한 책임이 있다. 교육부는 교육구 전체에 적용되는 징계 규칙에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 체계적 접근법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c) 다만, 학생이 교육부에서 수립된 정책,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법 또는 지방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본 부서는 본 챕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에서 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된 교육 환경을 촉진 및 유지한다;
- (2) 교육 과정과 자기 개발에 이로움을 주는 올바른 행동을 교육하고 인정한다;
- (3) 교육의 목표에 방해되거나 자기 파괴적, 자멸적, 또는 반사회적인 학생의 행동을 저지한다;
- (4) 교육 활동과 책임이 방해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학생 행동 질서를 유지한다; 및
- (5) 법적으로 보호되는 취약계층에 기초하여 학생을 차별(불법적인 차별 포함), 학대(성희롱 포함)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한다.

(d) 교육부에서 후원 또는 승인된 학교 프로그램, 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 노동자, 또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채용된 모든 교육 노동자는 학생들로부터 과도한 혼란, 무질서한 행동의 위협 또는 폭력적 행동이 그들에 대항하여 행해질 수 없는 환경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다.

(e) 이 챕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 조치에 더하여, 기물 파손이나 부주의에 대한 원상회복 또한 본 챕터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원상회복 규정의 목적은 기물 파손 및 부주의한 행동을 억제하고 기물 파손 및 부주의한 행동의 결과 발생한 공공건물의 재산 피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f) 일부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찰관이 학생을 조사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본 챕터는 또한 출석한 학생들의 권리와 이해를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협조하며 학교 환경을 보전하고 교직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정할 의도로 작성되었다. [Eff 9/1/82; am 5/23/86; am and comp 7/19/93; am and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2 정의. 본 챗터에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욕적 언어”는 부적절한 형태의 단어를 사용한 언어적 메시지를 뜻하며 여기에는 욕설, 비하 표현, 또는 불경스러운 언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폭행”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미필적으로,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거나 기타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특정 학생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문자, 구어, 그래픽 또는 신체적 행동이 충분히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하여 두려움을 조성하거나 위협적이거나 학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강도”는 개인, 또는 학교 건물 또는 학교에 위치한 기타 건물에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교육부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건물에 학교 승인 없이 진입하거나 머물러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 복지 서비스”는 Hawaii 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아동 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은 본 챗터에 기술된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및/또는 불링에 대한 민원 조사를 감시 및/또는 실행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 이내 기관을 의미한다.

“수업 빼먹기”는 학생이 무단으로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복합 구역 교육감”은 복합 구역과 그 내에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최고 행정 책임자를 의미한다.

“밀수품”은 생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불법인 소유물 이외에 과거 신체적 상해나 학교 운영에 방해할 초래하여 해당 교칙에 따라 학교 내에 들여오는 것이 금지된 소유물을 의미한다.

“통제 물질”은 Hawaii 주 개정 법령, 챗터 329, 파트 I부터 V까지 정의된 약물 또는 물질을 의미한다.

“교정 및 학생 면담”은 학생이 행정관, 담당 교사(들) 및/또는 학부모와 면담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음을 의미한다.

“위기 퇴장”은 학생의 행동이 본인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학생의 행동이 너무나 난폭하여 부당한 방해 없이 교육을 추구할 다른 학생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즉각적인 퇴장이 필수적인 비상 상황 시 학생을 학교에서 즉시 퇴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한 학생 또는 직원을 상처 주거나 해하거나 모욕하거나, 또는 위협하는 내용을 인터넷, 휴대전화, 또는 기타 무선 휴대 기기를 통한 전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충분히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하여 두려움을 조성하거나 위협적이거나 학대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발생할 수 있다:

- (1)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
- (2) 교육부 승인 통신 없이 무단 접근한 교육부 데이터 시스템; 또는
- (3) 그러한 행동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외 컴퓨터 네트워크.

또한, 사이버불링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성적 표현, 나이, 국적, 조상, 장애, 외모와 특성, 및 사회 경제적 지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개인의 특징에 기초하여 가해질 수도 있다.

“위험한 도구, 또는 “물질”은 생물 또는 무생물이거나 관계없이 사용되거나 사용하려고 의도한 경우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폭발 장치, 도구, 재료, 화학 물질을 의미한다. 그러한 물품의 예시로는 칼, 파이프 폭탄 장치, 폭죽, 페퍼 스프레이, 곤봉, 무술봉이나 표창과 같은 무술 장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로 사람을 상대로 휘두르는 파이프, 막대, 또는 야구 배트와 같은 무생물 물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험한 무기”는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유일한 설계 및 목적으로 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그러한 도구의 예로는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더크, 단검, 발리슌, 스위치블레이드 나이프, 잭나이프, 슬러그탄, 곤봉, 금속 너클, 또는 기타 무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서”는 교육부를 의미한다.

“남게 하기”는 학생을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교내에 남게 하여 학생 비행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한 형태로서 학교 임원이 부과할 수 있는 교내 교육 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해당 학생이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벌적 전학”은 섹션 8-19-6을 위반한 결과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을 제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징벌적 전학에는 지리적 예외 허용 목적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규정한 타이틀 8, 챕터 13의 지리적 예외 무효와 관련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차별”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를 배제하거나 그러한 혜택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달리 학생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취약계층에 기초하여 남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퇴학”은 학생의 총기 소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남은 학년도 동안 또는 일 년 이상의 기간 동안 Hawaii 주 공립 학교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불손한 행동”은 교내 또는 그 외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 건물에서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동안 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동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 (1) 싸우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는 고함 또는 비명을 지르거나 두 가지를 모두 행하는 것과 같은 폭력적 또는 난동을 부리는 행위;

- (2)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비상식적인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 (3) 불쾌감을 주는 저속한 표현, 몸짓, 또는 전시 행위,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 위반 반응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4) 승인된 사용권 또는 허가 아래 수행되지 않은 행동에 따라 위협하거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5) 자선품이나 기타 형태의 구호를 구걸하거나 부추길 목적으로 공립 학교 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그들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 (6) 상호합의에 의한 성행위나 상호합의에 의한 신체 부위의 접촉, 또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수행하는 행위.

“마약 관련 도구”는 본 챕터 규정에 위반되는 통제 물질을 심거나 수확, 제조, 저장, 함유, 은닉, 주입, 섭취, 흡입하거나 달리 체내에 유입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되었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장비, 제품, 또는 재료나 그러한 도구의 조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1) 통제된 물질을 준비, 가공, 혼합, 보관 또는 은닉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을 의도했거나, 또는 사용되도록 설계된 키트, 기기, 장비, 분리 씨아기, 수평 저울, 블렌더, 그릇, 용기, 스푼, 캡슐, 풍선, 봉투, 기타 물체;
- (2) 통제된 물질을 인체에 주입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을 의도했거나, 또는 사용되도록 설계된 피하 주사기, 바늘 및 기타 물체;
- (3) 마리화나, 코카인, 헤시시, 또는 헤시시 오일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메탐페타민, 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섭취, 흡입하거나 달리 인체에 유도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을 의도했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다음에 해당되는 물체:
 - (A) 금속, 목재, 유리, 아크릴, 석재,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파이프, 워터봉, 흡연 및 기화 마스크, 꾀초 집게; 다시 말해, 손으로 잡기에 너무 작거나 너무 짧아진 대마초와 같은 타는 물질을 잡는 데 사용되는 물체;
 - (B) 미니어처 코카인 스푼 및 코카인 바이알병, 봉, 아이스 파이프, 또는 칠러; 및
 - (C) Hawaii 주 개정 법령 섹션 329-1에 기술 및 정의된 기타 모든 마약 관련 도구.

“교육 근로자”는 교육부의 행정관, 전문가, 상담원, 교사, 또는 교육부 직원이거나, 교육부에서 후원하거나 승인된 학교 프로그램, 활동, 또는 직책에 자원봉사하는 개인이거나, 계약에 따라 교육부에 의해 채용되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갈취”는 아래와 같은 개인이 범한 행동을 의미한다:

- (1) 개인의 소유물이나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언어 또는 행동을 도구로 삼아 탈취할 의도로 타인의 소유물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개인:
- (A) 위협하는 개인이나 또 다른 개인에게 미래에 신체적 상해를 입힐 것이라는 위협;
 - (B)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
 - (C) 위협하는 개인이나 또 다른 개인에게 신체적 구속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
 - (D) 그것이 사실 또는 거짓이거나 관계없이, 특정 인물이 중요, 모욕, 또는 조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그러한 인물의 사회적 신용 또는 사업상 평판을 해치는 비밀을 폭로하거나 주장된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 (E) 위협하는 개인이나 또 다른 개인이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 (F) 타인의 법적 소송 또는 변론과 관련하여 정보를 특정 정보를 증언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증언이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G) 공무원으로서 조치를 수행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이 그러한 조치를 수행하거나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H) 학생이 대표하고자 하는 그룹의 혜택을 위해 요구되지 않았거나 수령되지 않는 소유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파업, 보이콧, 또는 기타 유사한 집단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행위; 또는
 - (I) 본질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실행한 인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지만, 해당 인물의 건강, 안전, 교육, 사업, 천직, 경력, 재정 상태, 신망, 또는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계산된 모든 행위;
- (2) 본 정의 섹션 (A)항부터 (I)항까지 명시된 행위에 해당되는 언어 또는 행동을 통해 위협함으로써 타인이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개인, 또는 특정 행동에 참여할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개인; 또는
- (3) 갈취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 대출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신용 대출을 징수하는 개인.
- “싸움”은 분노 또는 적의를 동반한 신체적 접촉을 부추기거나 자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싸움은 다음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1) 분노 또는 적의를 동반한 상호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행동에 가담하는 행위;
 - (2) 타인을 놀림, 학대, 위협, 또는 협박하여 분노 또는 적의를 동반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 (3) 놀림, 학대, 위협, 또는 협박 행위에 신체적 보복을 가하는 행위; 언어를 사용한 부추김; 또는

(4) 현장에 함께하거나 격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싸움을 지지하는 행위.

“총기”는 다음을 의미한다:

- (1) 스타트건, 샷건, **BB**탄 총을 포함한 에어건, 펠렛건, 페인트볼 총, 또는 쇠뇌, 또는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발사하도록 설계되었거나 발사하도록 쉽게 개조될 수 있는 기타 모든 도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무기;
- (2) 그러한 무기의 프레임 또는 몸체;
- (3) 모든 총기 소음기; 또는
- (4) 모든 파괴 장치. “파괴 장치”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아래를 포함한 모든 폭발물, 인화물, 또는 유독 가스:
 - (i) 폭탄;
 - (ii) 수류탄;
 - (iii) 추진체가 있는 로켓;
 - (iv) 폭발물 또는 인화물이 탑재된 미사일;
 - (v) 지뢰; 또는
 - (vi) 전술된 조항에 기술된 모든 장치와 유사한 장치;
 - (B) 폭발물 또는 기타 추진체의 작동에 의해 발사체를 발사하는 무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발사하도록 쉽게 개조될 수 있는 기타 모든 형태의 무기; 또는
 - (C) 위에 기술된 모든 장치를 개조하는 데 사용되도록 설계되었거나 의도된 부품의 조합 및 이를 바탕으로 파괴 장치가 쉽게 조립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조합.

“위조”는 다음을 의미한다:

- (1) 학생이 문서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서명하는 행위; 또는
- (2) 기금 모금 행사나 스포츠 행사 티켓과 같은 물품을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복제하는 행위.

“도박”은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본인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없는 우연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이벤트 결과에 기대어 해당 인물이나 타인이 그러한 이벤트 결과에 따라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수령하게 된다는 합의 또는 이해 아래 내기하거나 위험에 맡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박은 미래 날짜의 증권이나 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 계약과 면책 계약이나 보증, 생명보험, 의료보험, 또는 사고보험 계약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계약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계약법에 따라 유효한 정식 비즈니스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행동, 의복, 헤어스타일, 활동, 목소리, 또는 습관을 통해 개인이 타인에게 성별을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성정체성”은 성과 관련된 정체성이 개인의 생리학적 상태나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다를지라도 개인의 내적,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남성, 여성, 또는 그외 성별에 관한 감각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성정체성이 있다.

“학대”는 문자, 구어, 또는 육체적 방식을 사용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취약계층의 학생을 포함한 학생에게 가하는 모든 위협, 모욕, 또는 위반 행위를 의미한다. 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야만 성립된다:

- (1) 학생에게 그 또는 그녀 자신이나 소유물에 해를 입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두려움 조성;
- (2) 학생의 학업 성과, 기회, 또는 혜택에 지장 초래; 또는
- (3) 질서 있는 학교 운영의 방해.

“헤이징”은 교내 또는 그 외 교육부 건물,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육부에서 후원한 교내외 활동이나 이벤트 동안,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위협에 처하게 하는 모든 행동이나 학생 조직 또는 활동을 위한 신고식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한 행동에는 채찍질, 구타, 브랜딩, 강제적인 기합, 극한 날씨에 노출, 강제적인 음식, 주류, 음료, 약물 또는 기타 물질 섭취, 외설적 노출, 또는 그 외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두 가지 모두, 또는 학생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수면이나 휴식 박탈, 장기간 고립, 또는 개인적 모욕을 포함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학생에게 가하는 처우 또는 강제적인 육체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하이재킹”은 위협을 통해서나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살인”은 타인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터넷 자료 및 장비의 부적절한, 또는 의문스러운 사용 또는 두 가지 모두”는 학생이 교육부의 주 전역 및 학교 당국의 테크놀로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자원의 부적절한, 또는 의문스러운 사용의 예시로는 필터를 비활성화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나 교육부의 사명과 목적에 어긋나는 도박 소프트웨어, 음악 공유 소프트웨어, 또는 노골적인 성적 사진 및 그림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법 약물”은 Hawaii 주 개정 법령 챕터 329 및 Hawaii 주 개정 법령 챕터 712, 파트 IV에 따라 금지된 물질이나 그러한 물질의 소지, 배포, 섭취, 제조, 사용, 판매 또는 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각적 중재”는 민원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늦더라도 칠십이 시간 이내에, 학생을 인종, 성별, 또는 장애에 기초한 차별, 학대 또는 불링을 포함한 잠재적인 학대 또는 불링에서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제기자/피해자 또는 해당한다면 민원과 관련된 피고 각각, 또는 모두에게 제공된 개별화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각적 중재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제공될 수 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공되는 즉각적 중재는 상담, 시간의 연장 또는 기타 학사 과정과 연관된 조정, 과제 또는 수업 일정의 변경, 교내 호위 서비스, 당사자들 간 접촉 제한, 결석 허가, 교내 특정 구역에 대한 보안 및 감시 강화, 또는 기타 유사한 대응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즉각적 중재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부터 결과-조사, 징계, 또는 배상 관련-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사례별로, 또는 임시로 교육부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민원 제기자/피해자의 교육 경험을 보전하고 모든 당사자와 교육부 전체 커뮤니티의 안전을 확보하며 조사

및/또는 해결 과정의 정당함을 유지하고 보복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실행될 수 있다. 즉각적 중재는 조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는 추가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학생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개별화 교육”은 징계 조치의 하나로써 학생이 본인의 문제 행동에 맞추어 개발된 개별화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화 교육의 예시로는 행동 관련 계약이나 사회적 기술 훈련, 또는 전문적인 두 가지를 혼합한 계획을 개발하는 행동 지원 계획의 개발과 실행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항”은 교사, 경찰관,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교육부 직원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내 정학”은 징계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을 그/그녀의 학교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제거하지만, 학교 담당자의 직접적인 감독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교육 과정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 대안 교육 환경” 또는 “IAES”는 징계로 인해 현재 교육 환경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달리 제거된 학생에게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설정된 목표 충족을 위한 진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 일시적 교육 환경을 의미한다.

“중독성 물질의 사용”은 알코올음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정상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물질의 사용을 의미한다.

“레이저 펜/포인터”는 겨냥된 표면에서 점으로 나타나는 밝은 레이저 광선을 발산하는 장치로 승인된 교육부 목적과 사용 용도에 위배되는 장치를 의미한다.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육부가 후원하는 교내외 활동 또는 이벤트 동안 그러한 장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교 무단이탈”은 학교 건물, 교육부 시설, 또는 교육부 프로그램을 학교 임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저강도 문제 행동”은 낮은 빈도로, 단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또는 “우송됨”은 문서가 다음과 같이 전송되었음을 의미한다:

- (1) 일반 우편;
- (2) 등기 우편; 또는
- (3) 수령 영수증 반환 요청 우편.

“사소한 문제 행동”은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저강도 문제 행동의 표출을 의미한다.

- (1) “반항/무례/규정 비준수”는 학생이 성인의 요구에 일시적 또는 저강도로 부응하지 않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방해”는 학생이 저강도, 부적절한 방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복장 규정 위반”은 학생이 학교에서 정한 복장 규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부적절한 언어”는 학생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저강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신체적 접촉”은 학생이 심각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6) “건물 오용”은 학생이 건물을 오용하는 저강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7) “지각”은 학생이 학교 일과가 시작된 후에 학교에 도착하거나 학생이 수업이 시작된 후에 학교에 도착하는 행위, 또는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의미한다.

“부주의”는 개인에 대한 피해나 학교 교과서, 장비, 또는 물품의 손실, 파괴, 고장 또는 손상의 결과가 초래된 유사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주의 깊은 개인이 사용했을 주의력을 사용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한다.

“학부모”는 친부모 또는 법적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그 외 학생에 대한 법적 양육권이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만 십팔 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여기에 기술된 모든 학부모 권리는 친부모 또는 법적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그 외 학생에 대한 법적 양육권이 있는 개인이 학생을 위한 의사 결정 권리를 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한 그러한 학생에게 양도된다.

“재산 피해” 또는 “기물 파손”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학교 또는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 (2) 학교 건물 또는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또는
- (3) 다이어리, 이름표, 또는 식사 카드가 포함되거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용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본 챕터의 목적상 “취약 계층/기반”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적체성, 성적 표현, 나이, 국적, 조상, 장애, 외모와 외향적 특성, 및 사회 경제적 지위가 포함된다.

“교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경험을 보전하거나 모든 학생과 교육부 전체 커뮤니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된 개별화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학생에 대한 교정 서비스에는 학사 일정과 과정의 조정, 및 학업, 의료 및 심리학적 지원 서비스 제공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짓 정보 작동”은 학생이 거짓 화재 정보 또는 비상정보를 올려 공식 또는 자원봉사 소방서, 정부 기관, 또는 생명 또는 건물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공공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관 내에서 거짓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상회복”은 학생의 부주의 또는 기물 파손 행위의 결과 소실, 손상, 파손, 또는 파괴된 공립 학교 재산에 적합한 가치의 배상을 교육부 또는 Hawaii 주에 금전이나 비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복”은 학생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학생에게 가하는 적대적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에는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또는 불링에 대한 민원 제출;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또는

불링에 대한 민원 제출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 본 챗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문의; 또는 달리 본 챗터에 따라 적용되는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적대적 행위는 상식적인 개인이 본 규정에 따라 민원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에 대한 양갈음 또는 보복은 금지된다.

“강도”는 절도, 또는 하이재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1) 타인을 살해하려고 했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했거나 가하려고 시도한 행위를 의미한다; 또는

(2)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고:

(A) 소유자의 물리적 저항이나 물리적 저항력을 압도할 의도로 해당 인물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B) 재산을 탈취하거나 탈취한 재산을 가지고 도주할 때 목인을 강요할 의도로 현장에 있는 인물에게 물리적인 힘의 즉각적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는

(C)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 또는 “공립 학교”는 주법에 따라 교육부에 의해 설립 및 유지되는 모든 정규 학교와 칼리지 유형이 아닌 모든 학교를 의미한다.

“교재”는 도서관의 책과 교과서를 의미한다.

“학교 임원”은 학생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관, 전문가, 상담원, 교사, 학교 보안 직원, 또는 그 외 교육부 지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시적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 관련 위반 행위”는 학교 건물과 관련된 위반 행위, 또는 교내나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 행위를 의미한다.

“교칙”은 학교에서 제정된 학교 전체 행동 규칙을 의미한다.

“교직원”은 교사, 임원, 또는 교육부의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수색”은 학생에게 자발적으로 밀수품(들)을 제출하기를 요청한 후에도 학생이 그러한 요청을 거부했고 해당 학생이 법률이나 본 챗터에 따라 금지된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또는 불법 약물, 위험한 무기, 위험한 도구 또는 총기, 또는 전술한 물품의 조합과 관련하여 건강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 임원은 핸드백, 패니팩, 학교 가방, 재킷, 신발, 양말, 또는 기타 걸옷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물과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다.

“몰수”는 수색 동안 발견되지 않은 밀수품(들)을 압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중징계”는 퇴학, 징벌적 전학, 위기 퇴장 및 십일을 초과하거나 영향을 받은 학생이 위기 퇴장을 당하거나 한 학기 내에서 총 십일 이상 정학되는 결과를 가져온 정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의미한다.

“성폭행”은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이 개인에게 성적인 형태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한 접촉은 당사자의 승인 없이 발생했을 때, 또는 당사자가 승인을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달리 승인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발생했을 때 원치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승인은 상호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긍정적, 의식적, 자발적 합의를 의미한다. 만약 학생이 성폭행 대상이었고 승인을 제공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승인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폭행은 성희롱의 한 형태이다.

“성착취”는 타인의 성적 프라이버시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승인 없이 부당한, 또는 학대적인 성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러한 행동이 성폭행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성립된다. 승인은 상호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긍정적, 의식적, 자발적 합의를 의미한다. 만약 학생이 성착취 대상이었고 승인을 제공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승인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착취는 성희롱의 한 형태이다.

“성희롱”은 그 또는 그녀의 성별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원치 않는, 달갑지 않은, 또는 구하지 않은 언어적 또는 신체적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에는 그러한 행동에 복종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 또는 교육부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 참여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조건일 경우; 또는 그러한 행동에 복종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 또는 교육부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 참여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 사용된 경우 이루어진 성적 호의나 성적 관계의 진전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 성희롱에는 또한 성적 비행, 달갑지 않은 성적 관계의 진전, 성적 호의의 요구, 또는 그 밖의 성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성적인 성격의 신체 접촉, 성적 표현, 농담 또는 몸짓을 하는 행위, 낙서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스케치, 그림 또는 작문을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학생을 성적인 의미를 담은 별명으로 부르는 행위, 성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학생을 성적 활동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행위, 또는 성적인 성격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배포하거나, 보여주거나, 또는 제작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성착취와 성폭행 또한 성희롱의 정의에 포함된다.

“성적 지향”은 개인이 타인의 성별에 기초하여 어떤 인물에 대하여 감정 및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적 지향을 뜻하는 일반적 용어에는 이성애, 남성 동성애, 여성 동성애, 양성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은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흡연” 또는 “담배 제품의 사용”은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담배 제품을 소지, 사용, 판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스토킹”은 신체적, 감정적, 또는 정신적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또는 학대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히 심각한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두 가지 이상의 원치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알몸 수색”은 성기, 여성의 가슴, 또는 속옷의 노출 또는 그러한 상황이 조합된 결과를 가져오는 의복의 탈의가 요구되는 수색 방법을 의미한다.

“정학”은 학년도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 학생을 학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스위치블레이드 나이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칼날이 자동으로 열리는 모든 나이프를 의미한다:

(1) 나이프 손잡이에 있는 버튼이나 기타 장치를 손으로 누르는 방법, 또는

(2) 관성, 중력, 또는 두 가지 모든 성질이 활용된 방법.

“테러 위협”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언어 또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겠다는 협박;
- (2) 건물, 회합 장소, 또는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대피를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 또는 그러한 위협성을 무시한 무모한 행동; 또는
- (3) “유사” 총기 또는 무기의 전시.

“절도”는 다음을 의미한다:

- (1) 타인의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여 그러한 개인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행위;
- (2) 타인의 소유물을 속임수를 사용하여 취득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여 그러한 개인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행위;
- (3) 타인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나 잘못 놓아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소유물의 본질 또는 수량, 수령인의 신원, 또는 기타 사실과 관련하여 잘못 배달되었음을 알고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통제력을 행사하여 해당 소유물을 소유주로부터 탈취할 의도로 소유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알려주는 데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4) 당사자가 유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서비스를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속임수, 가짜 토큰, 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행위;
- (5) 당사자에게 자격이 없는 타인의 서비스 권한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거나 자격이 없는 다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행위;
- (6)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요구된 금액을 양도하지 않는 행위:
 - (A) 지정된 금액을 지불하거나 소유물로부터, 또는 소유물을 통한 수익금에서, 또는 당사자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부터 동등한 금액에 해당되는 기금을 양도한다는 계약에 따라, 또는 명시된 법적 의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소유물을 취득하고 그러한 소유물을 당사자 본인의 재산으로 취급하며 요구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또는
 - (B) 고용의 조건으로 제삼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거나 달리 금액을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서비스를 받고 그러한 대금을 적절한 시간 이내에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는 행위;
- (7) 소유주로부터 소유물을 탈취할 의도로 그러한 소유물이 절도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소유물을 수령, 보관, 또는 처분하는 행위; 또는
- (8) 샹리프팅:
 - (A) 사취할 목적으로 교육부 상점이나 교육부 소매점의 상품이나 재화를 은닉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B) 사취할 목적으로 교육부 상점이나 교육부 소매점의 상품이나 재화의 가격표 또는 기타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 (C) 사취할 목적으로 교육부 상점이나 교육부 소매점의 상품이나 재화를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기는 행위.

“불법 침입”은 학교 책임자 또는 경찰로부터 퇴장하라는 합당한 경고 또는 요청을 받은 후에도 학교 또는 교육부 시설 경내에 진입하거나 남아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무단결석”은 학생이 교장이나 담당자로부터 승인 없이 수업(들) 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Eff 9/1/82; am 5/23/86; am and comp 7/19/93; am and comp 5/19/97; am and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01, 302A-1101, 302A-1112, 302A-1134, 302A-1134.5)

§8-19-3 적용례. (a) 본 챕터의 규정은 나이와 관계없이 정규 학년도, 여름 세션, 또는 인터세션 동안 공립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기숙사 학생은 학기가 진행 중인 동안은 학과 시간 이외에도 학교에서 정했고 기숙사 학생의 학부모(들) 또는 법적 보호자(들)가 서면 승인을 통해 동의한 기숙사 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b) 해당하는 챕터의 규정에 따라 특수 교육이나 기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의 징계 시에는 장애 학생에 대한 Hawaii 주 행정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c) 서브챕터 2에 참조된 교장 또는 담당자는 여름 학교 기간 동안 징계의 경우 여름 학교 책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챕터에서 참조된 학년도는 여름 학교가 적용될 경우 여름 세션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d) 인터세션이나 여름 학교 동안의 징계 처분은 서브챕터 3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년도 연장 기간 동안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서브챕터 2와 장애 학생에 대한 Hawaii 주 행정 규칙에 따른 지침과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 학생이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와 보고 절차는 챕터 8-34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경우, 장애 학생에 대한 Hawaii 주 행정 규칙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f) 정학, 중징계, 또는 기물 파손이나 부주의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된 어떤 조치도 본 챕터의 규정을 초과하여 취해질 수 없다.

(g) 학생에 대한 경찰 조사 또는 체포, 또는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본 챕터 규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h) 법적으로 보호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성인(들)의 행동과 관련된 규정은 챕터 8-89에 포함된 지침을 참조한다. [Eff 9/1/82; am 5/23/86; am and comp 7/19/93; am and comp 5/19/97; am and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8-19-4 분리성. 본 챕터의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을 어떠한 개인 또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하게 되었다면, 것처럼 효력이 상실된 규정은 해당 규정이나 적용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을 수 있는 본 챕터의 다른 규정이나 적용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면에서 본 챕터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Eff 5/23/86;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comp 9/10/0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8-19-4.1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a) 민원, 조사 및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사와 의사 결정 과정을 완료하는 데 필수적인 적절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어야 한다.

(b) 학생과 관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c) 조사 기록은 교육 기록과는 별도로 교육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Eff NOV 17 2019] (Auth: HRS §302A- 1112) (Imp: HRS §§302A-1101, 302A-1112)

서브챕터 2

정규 학년도 동안 학생 비행 및 징계

§8-19-5 징계 조치; 권한. (a) 수업일 십일을 초과하는 정학이나 학생이 한 학기에 수업일 합계 십일 이상 정학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학, 징벌적 전학, 퇴학 및 위기 퇴장의 연장 처분은 복합 구역 교육감으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b) 위기 퇴장과 수업일 십일 이하의 정학은 교장이나 담당자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c) 징계 조치 결정 시, 교장이나 담당자는 가해자의 의도와 위반 행위의 성격 및 심각성과 그러한 행동이 개인 또는 폭력단과 같은 개인의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는지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위반 행위의 영향력, 가해자의 나이, 및 가해자는 그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이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Eff 9/1/82; ren §8-19-4,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Auth: HRS §§302A-1112, 302A-1002) (Imp: HRS §§302A-1112, 302A-1002)

§8-19-6 금지된 학생 행동; 학급 내 위반 행위. (a) 아래 금지된 행동은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1) A 등급 위반 행위:

- (A) 폭행;
- (B) 불링(9-12학년 학생 대상);
- (C) 강도;

- (D) 사이버불링(9-12학년 학생 대상);
- (E) 위험한 도구, 또는 물질; 그러한 물질의 소지 또는 사용;
- (F) 위험한 무기; 그러한 무기의 소지 또는 사용;
- (G) 마약 관련 도구; 그러한 도구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H) 갈취;
- (I) 싸움;
- (J) 총기; 그러한 총기의 소지 또는 사용;
- (K) 학대(9-12학년 학생 대상);
- (L) 살인;
- (M) 불법 약물; 그러한 약물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N) 중독성 물질; 그러한 물질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O) 재산 피해 또는 기물 파손;
- (P) 강도;
- (Q) 성폭행;
- (R) 성착취;
- (S) 성희롱(5-12학년 학생 대상);
- (T) 스토킹; 또는
- (U) 테러 위협.

(2) B 등급 위반 행위:

- (A) 불링(유치원-8학년 학생 대상);
- (B) 사이버불링(유치원-8학년 학생 대상);
- (C) 차별;
- (D) 불손한 행동;
- (E) 거짓 경보;
- (F) 위조;
- (G) 도박;
- (H) 학대(유치원-8학년 학생 대상);
- (I) 헤이징;
- (J) 인터넷 자료 또는 장비, 또는 두 가지 모두의 부적절한, 또는 의문스러운 사용, 또는 두 가지 모두;
- (K) 보복;
- (L) 성희롱(유치원-4학년 학생 대상);
- (M) 절도; 또는
- (N) 불법 침입.

(3) C 등급 위반 행위:

- (A) 모욕적 언어;
- (B) 수업 빼먹기;
- (C) 반항;
- (D) 레이저 펜/레이저 포인터; 그러한 물품의 소지 또는 사용;
- (E) 학교 무단이탈;
- (F) 흡연 또는 담배 제품의 사용; 또는

(G) 무단결석.

(4) D 등급 위반 행위:

(A) 밀수품; 그러한 물품의 소지 또는 사용;

(B) 사소한 문제 행동; 또는

(C) 기타 학교 규칙.

(i) 학교 규칙에 따라 규정 및 금지될 수 있는 기타 모든 행동. 개별 학교의 규칙은 교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인쇄 또는 구비되어야 하며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본 섹션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금지된 행동을 알려주어야 한다.

(ii) D 등급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개별 학교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징계 조치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범위까지 부과될 수 없다.

(b) 총기를 소지한 모든 학생은 일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아야 한다.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부서 내, 또는 운동부, 클럽 및/또는 청소년 학군단(JROTC)의 사격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사격 훈련, 교육 및 시합에 참여할 경우를 제외한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 또는 담당자는 사례별로 총기를 소지한 것이 발견된 학생의 퇴학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퇴학당했다면, 해당 학생에게는 섹션 8-19-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안적 교육 활동이나 기타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c) 학교에 출석한 동안 위험한 무기, 스위치블레이드 나이프 또는 그 외 부적절한 용도의 칼, 중독성 물질(들), 또는 불법 약물(들)을 소지, 판매, 또는 사용한 학생은 수업일 구십이일까지 학교 출석이 금지될 수 있다. 학교에 출석하기 전, 또는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개최되는 교육부 감독 활동에 출석하기 전에 중독성 물질(들) 또는 불법 약물(들)에 취했거나 그러한 물질을 섭취했거나 사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학생은 수업일 구십이일까지 학교 출석이 금지될 수 있고 해당 학교는 그러한 학생이 Hawaii 주 개정 법령 섹션 302A-1134.6(f)에 따라, 물질 남용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물질 사용 선별 검사 도구를 사용한 검사를 실행해야 한다. 학교 행정관은 본 챕터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고된 사건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징계 조치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학교 행정관은 선별 검사 전문가를 통한 학생의 선별 검사를 주선해야 한다. 지정된 선별 검사 전문가는 학생 검사 결과를 요약하여 학교 행정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다음 학교 행정관은 선별 검사 결과와 조기 복귀를 위한 법률 규정을 학생 가족에게 통지하고 물질 남용 검사를 수행해줄 수 있는 의료 보험 기관 연락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선별 검사를 받는 동안 학생에게는 물질 남용 문제 위험성의 낮음,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을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이 제공된다. 만약 선별 검사 결과 위험성이 높음이나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면, 그러한 학생은 정식 물질 남용 검사를 받게 된다. 정식 물질 남용 검사는 물질 남용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해 임상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고 그러한 경우 치료 권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물질 남용 검사를 받게 된

학생에게 의료 보험이 있다면, 그러한 학생은 의료 보험사에 연락하여 검사 일정을 예약하도록 요청된다. 물질 남용 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는 공인 물질 남용 상담원(CSAC), 정신과 의사, 고급 전문 간호사(APRN), 심리학자 및 면허가 있는 임상 사회 복지사가 포함된다. 교장 또는 담당자는 수업일 일일에서 십일까지 정확을 승인할 수 있다. 수업일 십일을 초과하는 정확은 복합 구역 교육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거나 징계 조치를 결정할 시, 교장 또는 담당자는 위반 행위의 성격 및 심각성, 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친 영향 및 가해자의 나이와 가해자는 그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이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대안적 교육 활동이나 기타 적절한 학생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교장 또는 담당자가 적절한 교직원과 논의한 후, 또는 해당하는 경우, 장애 학생에 대한 Hawaii 주 행정 규칙에 따라 내린 결정에 기초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중재 또는 치료 서비스나 두 가지 모두가 추천되도록 해야 한다.

(d) 징계 조치는 본 챕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섹션 8-19-5에 지정된 당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아래 옵션 이내에서 유치원부터 십이 학년에 해당되는 모든 학급의 위반 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중재 프로그램은 징계 조치가 부과될 때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징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 (1) 교정 및 학생 면담;
- (2) 남게 하기;
- (3) 위기 퇴장;
- (4) 학생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개별화 교육;
- (5) 교내 정확;
- (6) 임시 대안적 교육 환경;
- (7) 특권 박탈;
- (8) 학부모 면담;
- (9) 교사 면담;
- (10) 수업일 일일부터 십일 정확;
- (11) 수업일 십일일 이상 정확;
- (12) 토요일 수업;
- (13) 징벌적 전학;
- (14)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에 추천;
- (15) 퇴학; 또는
- (16) 원상회복.

(e) 학생은 서브섹션 (c)와 (d)에 따라 부과된 징계 조치와 더불어 상담을 받아야 한다.

(f) D 등급 위반 행위를 범한 학생에게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어떠한 조치도 부과될 수 없다.

(g) 수업 빼먹기 또는 무단결석한 학생에게는 어떠한 정확이나 중징계 조치도 부과될 수 없다.

(h) 서브섹션 (c)와 (d)에 포함된 징계 조치 옵션은 학년도 이내에서 부과되는 징계 조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i) 징계 조치는 위반 행위가 해당 학년도 학생들에 대한 최종 수업일로부터 수업일 이십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다음 학년도까지 이월될 수 있다. [Eff 9/1/82; am and ren §8-19-5, 5/23/86; am and comp 7/19/93; am and comp 5/19/97, am and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302A-1134, 302A-1134.5)

§8-19-7 위기 퇴장. (a) 비상 상황의 경우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생의 행동이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와 증거물에 따라, 또는 학생의 행동이 너무나 난폭하여 부당한 방해 없이 교육을 받을 다른 학생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학생의 즉각적인 퇴장이 필요할 경우 학생에게 즉각적인 위기 퇴장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b) 학교는 위기 퇴장 조치를 부과한 즉시 전화로 학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 그 후 위기 퇴장 통지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위기 퇴장 통지문에는 아래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1) 위기 퇴장의 근거가 된 학생이 범한 구체적 행동에 관한 주장;
- (2)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행동에 관한 주장;
- (3) 징계 조치(들)에 관한 기술; 및
- (4) 학부모와 만나기 위해 학교 당국에서 제안하는 면담일, 시간 및 장소에 관한 기술. 위기 퇴장 통지문의 사본은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또한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교장 또는 담당자는 본 서브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위기 퇴장 통지문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통지문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d) 위기 퇴장의 대상이 된 학생은 위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즉시 학교 출석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e) 위기 퇴장은 항소 기간 동안 복합 구역 교육감으로부터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업일 십일 이상 지속될 수 없다. [Eff 9/1/82; am and ren §8-19-6,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8-19-7.1 조사. (a) 위기 퇴장 조치를 수행한 직후나, 또는 교장이나 담당자가 학생의 행동이 정학 처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면밀한 조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및/또는 보복에 대한 민원은 섹션 8-19-30의 민원 및 조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b) 조사 수행 시, 교장 또는 담당자는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간에 학교의 조사 수행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교장 또는 담당자가 학부모와 연락할 수 없다면, 학교는 조사를 진행 및 완료할 수 있다.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교장 또는

담당자가 위기 퇴장 조치 이외에 중징계 부과를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교장 또는 담당자는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면담한 증인들의 증언과 그 외 증거 및 교장 또는 담당자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이유(들)가 요약된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c)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된 통지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학생 또는 학부모가 혐의(들)를 부인한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교 임원이 발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시해야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는 사건에 관한 학생 측의 설명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Eff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8-19-8 정학. (a) 교장이나 담당자가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에 가담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즉시 사건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학생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완료된 후 교장 또는 담당자가 조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장 또는 담당자는 증거 사실과 징계 조치를 서면으로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b) 만약 학생 또는 학부모가 혐의(들)를 부인한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교 임원이 발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시해야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 또는 양측 모두에게는 사건에 관한 학생 측의 설명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이 혐의의 심각성, 공식 절차의 본질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유의미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나이, 지능 또는 경험에 해당된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면담에 학부모가 참석해주시기를 요청해야 한다.

(c) 한 학기 이내의 정학 일수 합계가 수업일 십일을 초과할 경우, 법률에 따라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 챕터의 정당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d) 학부모에게는 기간과 관계없이 정학 사실을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정학 전 통지는 가능하다면, 전화로 제공되어야 하고 조사 완료 후 통지는 서면으로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정학 통지문에는 아래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1) 정학의 근거가 된 학생이 범한 구체적 행동에 관한 주장;
- (2)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행동에 관한 주장;
- (3) 징계 조치(들)에 관한 기술; 및
- (4) 학부모와 만나기 위해 학교 당국에서 제안하는 면담일, 시간 및 장소에 관한 기술.

정학 통지문의 사본은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또한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교장은 본 서브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정학 통지문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통지문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ff 9/1/82; am and ren §8-19-7,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am and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8-19-9 십일 초과 정학, 징벌적 전학 및 퇴학에 대한 정당한 절차. (a) 만약 조사 결과,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생이 본 챕터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에 가담했다고 믿고, 또한 교장 또는 담당자는 위기 퇴장 조치 이외의 중징계가 부과되기를 권고한다면, 해당 교장 또는 담당자는 즉시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통지하여 해당 복합 구역 교육감으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은 후에 공식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b) 복합 구역 교육감으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은 후,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중징계 대상 사건,
- (2) 항소 기회, 및
- (3) 징계 조치는 즉시 집행된다는 사실.

(c) 교장 또는 담당자는 복합 구역 교육감으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삼일 이내에 중징계 사건에 관한 서면 통지문을 항소 양식을 동봉하여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중징계 사건 양식에 요구되는 복합 구역 교육감의 서명은 팩스를 통한 서명이나 전자적 승인 확인으로 충족된 것으로 한다. 중징계에 관한 서면 통지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징계의 근거가 된 학생이 범한 구체적 행동에 관한 주장;
- (2)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행동에 관한 주장;
- (3) 징계 조치(들)에 관한 기술; 및
- (4) 학부모는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고 그럴 경우 학부모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불러 교차 신문하거나 학부모가 항소일로부터 최소한 십일 이전에 변호사 선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는 기술.
- (5)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항소 요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중징계 통지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수업일 칠일에 해당되는 업무 종료 시간까지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학생은 교장이 그러한 학생의 지속적인 출석이 본인 자신이나 타인 또는 방해 없이 교육을 받을 다른 학생의 권리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본인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허가된다. 다만, 그러한 학생은 운동, 여행, 또는 클럽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d) 서면 항소 요청서를 받은 복합 구역 교육감은 수업일 십일 이내에 항소 심사일을 정하여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면 항소 심사 통지문은 항소 심사일로부터 최소한 십오일 이전에 학부모와 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항소 심사는 복합 구역 교육감이 수행하거나 본 교육부 임원일 수 있는 공정한 교육부 인사, 또는 공정한 담당자가 복합 구역 교육감의 지명을 받아 수행해야 한다. 항소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1) 항소 심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공개적으로 진행해주기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 (2) 학부모와 교장 또는 담당자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교차 신문하거나 반대 증언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3) 학부모와 교장 또는 담당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4) 복합 구역 교육감 또는 공정한 교육부 담당자는 형식상 증거법 규칙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 (5) 복합 구역 교육감 또는 공정한 교육부 담당자는 제시된 증거의 경중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6) 학부모는 본인 부담 아래, 법원 검토를 위해 요청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심사에 관한 교육부의 녹음테이프 사본이나 교육부의 녹음테이프 전사본을 기록 또는 취득할 수 있다. 복합 구역 교육감 또는 공정한 교육부 담당자는 해당 심사에 관한 전사본을 기록하거나 녹음테이프를 작성해야 한다;
- (7) 복합 구역 교육감은 항소 심사 종료일로부터 수업일 칠일 이내에 부과될 조치(들)와 그러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기술된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된 결정문은 학부모와 학생의 변호사에게, 또한 그에 대한 사본을 학교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야 한다. 만약 징계 조치가 그대로 인정되면, 복합 구역 교육감은 총 정학 일수를 제시하고 정학 시작일과 종료일 이내에 해당 학생에게 이미 적용되었을 수 있는 정학 일수를 고려해야 한다.

(e) 학부모는 항소 요청과 그들이 교육부 교육감이나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로부터 심리를 요청하는지 여부, 그리고 항소하는 개인이 제시할 증거 문서가 포함된 구체적인 쟁점 및 주장에 관한 구체적 기술이 포함된 통지문을 서면으로 제공함으로써 복합 구역 교육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서면 항소 요청서는 복합 구역 교육감의 서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수업일 칠일 이내에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구체적인 심리 요청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는 항소가 제출된 복합 구역 교육감 및 학부모 사이의 징계 결정 절차 기록 전체를 기초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학생은 복합 구역 교육감이 그러한 학생의 지속적인 출석이 본인 자신이나 타인 또는 방해 없이 교육을 받을 다른 학생의 권리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본인의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허가된다.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조치된 상황의 경우,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는 항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이십일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f) 서면 항소 요청서가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로부터 접수되면, 복합 구역 교육감의 서면 결정문과 본 섹션의 서브섹션 (d)에 따라 제공된 모든 문서 및 기록은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에게 십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는 증거를 검토하여 십사일 이내에 그러한 징계 조치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문은 학부모 또는 변호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또한 이 결정에 대한 항고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에게 반대 주장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담당자의 총기 소지 정학 기간이나 기간에 대한 조정 결정에 대한 항고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그러한 서면 항고 요청은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에 의해 심리된다. 서면 항고 요청서와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에게 반대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요청서는 교육부 교육감, 담당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오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서면 항고 요청서를 제출하는 반면, 반대 주장을 제기할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서면 항고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대 주장을 제기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학부모가 서면 항고 요청서와 반대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권리 요청서를 제때 제출한다면,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는 반대 주장 제기를 위한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수업일 이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반대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반론 제기를 위한 날짜는 학부모에게 반대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행한 날로부터 빨라도 오일 이후여야 하고 늦어도 십사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 교육감 또는 주에서 지정된 담당자는 반대 주장이 제기된 날로부터 십사일 이내에 학부모 또는 변호사에게 결정문을 서면으로 보내야 하며, 또는 학부모가 반대 주장을 제기할 학부모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서면 항고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십사일 이내에 결정문을 보내야 한다. [Eff 9/1/82; am and ren §8-19-8, 5/23/86; am and comp 7/19/93; am and comp 5/19/97; am and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 1112) (Imp: HRS §302A-1112)

§8-19-10 징계 조치 기간. (a) 만약 항소의 진행으로 인해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한 징계 조치는 모든 공립 학교 다음 학년도까지 이월될 수 있으나, 여름 학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b) 만약 징계 조치를 받는 결과로 이어진 행동이 해당 학년도 학생들에 대한 최종 수업일로부터 이십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그러한 징계 조치는 모든 공립 학교 다음 학년도까지 이월될 수 있으나, 여름 학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c) 본 섹션은 총기 소지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총기 소지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일 년 이상 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d) 서브섹션 (a)와 (b)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어떤 징계 조치도 그러한 행동이 발생한 학년도를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 [Eff 9/1/82; ren §8-19-9, 5/23/86; comp 7/19/93; am and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302A-1134)

§8-19-11 학생이 본 챕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공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활동 및 기타 지원. (a) 복합 구역 교육감은 수업일 십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기 퇴장 처분을 받았거나 수업일 십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학 처분을 받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에 따라 공공 기관 또는 사설 기관의 대안적 교육

활동이 제공되거나, 또는 기관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b) 수업일 일일에서 십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은 모든 학생에 대해서는 교장 또는 담당자가 학생의 필요에 따라 대안적 교육 활동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c) 본 챕터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애 학생에 대한 Hawaii 주 행정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ff 9/12/82; am and ren §8-19-10, 5/23/86;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302A-1112) (Imp: HRS §§302A-1112, 302A-1128)

서브챕터 3

여름 학교에서의 학생 비행 및 징계

§8-19-12 징계 조치; 권한. 여름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여름 학교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부과해야 한다. [Eff 5/23/86;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8-19-13 금지된 학생 행동; 학급 내 위반 행위. (a) 아래 금지된 행동은 여름 학교 일과 시간,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여름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1) A 등급 위반 행위:

- (A) 폭행;
- (B) 불링(9-12학년 학생 대상);
- (C) 강도;
- (D) 사이버불링(9-12학년 학생 대상);
- (E) 위험한 도구, 또는 물질; 그러한 물질의 소지 또는 사용;
- (F) 위험한 무기; 그러한 무기의 소지 또는 사용;
- (G) 마약 관련 도구; 그러한 도구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H) 갈취;
- (I) 싸움;
- (J) 총기; 그러한 총기의 소지 또는 사용;
- (K) 학대(9-12학년 학생 대상);
- (L) 살인;
- (M) 불법 약물; 그러한 약물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N) 중독성 물질; 그러한 물질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O) 재산 피해 또는 기물 파손;
- (P) 강도;
- (Q) 성폭행;

- (R) 성착취;
- (S) 성희롱(5-12학년 학생 대상);
- (T) 스토킹; 또는
- (U) 테러 위협.

(2) B 등급 위반 행위:

- (A) 불링(유치원-8학년 학생 대상);
- (B) 사이버불링(유치원-8학년 학생 대상);
- (C) 차별;
- (D) 불손한 행동;
- (E) 거짓 정보;
- (F) 위조;
- (G) 도박;
- (H) 학대(유치원-8학년 학생 대상);
- (I) 헤이징;
- (J) 인터넷 자료 또는 장비, 또는 두 가지 모두의 부적절한, 또는 의문스러운 사용, 또는 두 가지 모두;
- (K) 보복;
- (L) 성희롱(유치원-4학년 학생 대상);
- (M) 절도; 또는
- (N) 불법 침입.

(3) C 등급 위반 행위:

- (A) 모욕적 언어;
- (B) 수업 빼먹기;
- (C) 반항;
- (D) 레이저 펜/레이저 포인터;그러한 물품의 소지 또는 사용;
- (E) 학교 무단이탈;
- (F) 흡연 또는 담배 제품의 사용; 또는
- (G) 무단결석.

(4) D 등급 위반 행위:

- (A) 밀수품; 그러한 물품의 소지 또는 사용;
- (B) 사소한 문제 행동; 또는
- (C) 기타 학교 규칙.

(b) C 등급 및 D 등급 위반 행위: 여름 학교 기간 중 섹션 8-19-6에 정의된 C 등급 또는 D 등급 위반 행위를 두 번 범한 여름 학교 학생은 첫 번째 위반 행위 시 경고를 받게 되고, 두 번째 위반 행위 시 여름 학교에서 퇴출될 수 있다.

(c)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행위를 범한 학생은 여름 학교에서 퇴학 조치되어야 한다. 여름 학교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여름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면담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름 학교 책임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학부모에게는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d) 비상 상황의 경우 여름 학교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학생의 행동이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유발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또는 학생의 행동이 너무나 난폭하여 부당한 방해 없이 교육을 받을 다른 학생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학생의 즉각적인 퇴장이 필요할 경우 학생에게 즉각적인 위기 퇴장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여름 학교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학생을 여름 학교에 다시 복귀시키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면담 시간을 가져야 한다. 면담을 하지 않고는 어떤 학생도 학교에 복귀시킬 수 없다. 여름 학교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학부모에게는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Eff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서브챕터 4

학교 수색 및 몰수

§8-19-14 학생 로커 공개 및 조사에 관한 정책. 교내 학생에게 제공된 학교의 로커는 수색의 근거가 학생의 인종, 피부색, 국적, 조상, 성별, 성적체성 및 성적 표현, 종교, 장애, 또는 성적 지향 때문이 아닌 이상 근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학교 임원에 의해 공개 및 수색(및 외부에서 조사건 냄새 수색)될 수 있다. 섹션8-19-15는 학생 로커 공개 및 조사(및 외부에서 조사건 냄새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섹션 8-19-15부터 8-19-18까지의 제한 규정이나 일반적 학교 수색 및 몰수와 관련된 규정은 그 어떤 것도 학생 로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학생은 본인의 로커가 근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공개 및 조사(및 외부에서 조사건 냄새 수색)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Eff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15 일반적 학교 수색 및 몰수에 관한 정책. 학생 로커에 관한 섹션 8-19-14의 조항을 제외하고, 학생은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합당한 기대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질서와 환경을 유지할 필요 또한 위와 동등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한 정당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임원은 때때로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수색 및 몰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학생 로커에 관한 섹션 8-19-14의 조항을 제외한 일반 정책으로서, 수색 및 몰수 작업은 수색을 통해 학생 또는 학생들이 법률이나 본 챕터에 따라 금지된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황에 따라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학교 임원은 본 챕터 규정을

준수하여 수색 및 몰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Eff 5/23/86;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16 권한. 학생 로커에 관한 섹션 8-19-14의 조항을 제외하고, 수색을 통해 학생 또는 학생들, 또는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법률이나 본 챕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황에 따라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색할 수 있다. 학교 임원은 개인 또는 개인들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증인으로서 다른 학교 임원을 동반하여 수색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Eff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17 일반적 학교 수색 및 몰수 규정이 집행될 수 있는 조건. (a) 학생 로커에 관한 섹션 8-19-14의 조항을 제외하고, 수색과 몰수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학교 임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1) 수색 당시, 학생 또는 학생들이 법률이나 본 챕터에 따라 금지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황에 따라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2) 수색 작업이 진행될 방식은 수색의 목적과 적절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3) 수색의 대상이 될 학생에게는 그러한 수색의 목적을 통지해야 하고 학교 임원이 찾고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양도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b) 수색 작업을 수행할 학교 임원은 개인 또는 개인들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수색 작업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수색의 목적을 교장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c)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위반 행위를 범한 것이 의심된다면, 그리고 실행 가능하고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수색을 수행하는 학교 임원은 수색을 통해 찾고자 하는 물품을 소지했을 것으로 가장 의심되는 학생부터 수색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Eff 5/23/86; am and comp 7/19/93; am and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703-309(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703-309(2))

§8-19-18 금지된 수색 및 몰수. 학생 로커에 관한 섹션 8-19-14의 조항을 제외하고:

- (1) 무작위 수색은 금지된다.
- (2) 알몸 수색은 금지된다.

- (3) 학교 임원은 개인 또는 개인들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수색 작업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과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는 수색 작업은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4) 수색 과정에서 학생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 임원이 개인 또는 개인들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 경우, 또는 학생이 수색을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지된다.
- (5) 본 서브챕터 규정에 따라 수행된 수색 작업은 그러한 수색의 목적이 된 물체 또는 물체들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다만, 수색 작업 동안 발견된 다른 물체는 그러한 물체를 소지하는 것이 법률이나 본 챕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물체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수색을 수행하는 학교 임원을 포함한 개인 또는 개인들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학교 임원에 의해 몰수될 수 있다. [Eff 5/23/86;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서브챕터 5

위반 행위의 보고

§8-19-19 교내에서의 A 등급 및 B 등급 위반 행위의 보고. (a) 본 챕터에 정의된 바에 따라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행위를 목격했거나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행위가 학생, 교사, 임원, 또는 기타 교육부 직원, 또는 학교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모든 교사, 임원, 또는 기타 교육부 직원은 즉시 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 서브섹션의 어떤 조항도 모든 교사, 임원, 또는 기타 교육부 직원이 C 등급 또는 D 등급 위반 행위를 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금지 또는 만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b)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행위 보고를 받은 교장 또는 담당자는 보고된 행위가 즉각적인 경찰 신고를 요구하는지, 또는 그러한 행위는 학교 징계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교장 또는 담당자는 위협이 감지되었거나 그러한 행동이 교직원에게 의해 처리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c) 교장 또는 담당자는 위반 행위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오일 이내에 사건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d) 교장 또는 담당자는 그러한 사고가 서브섹션 (c)에 따라 보고된 날로부터 수업일 오일 이내에 해당할 경우, 교실 내 위반 행위(들)에 대해 부과된 징계 조치를 교사, 임원, 또는 기타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Eff 9/1/82; am and ren §8-19-11,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302A-1002) (Imp: HRS §§302A-1112, 302A-1002)

§8-19-20 위반 행위 보고에 대한 면책.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8-19-19 규정에 요구된 대로 사건을 보고한 모든 교사, 임원, 또는 기타 교육부 직원은 Hawaii 주 개정 법령 섹션 302A-1003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Eff 9/1/82; am and ren §8-19-12,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302A-1003) (Imp: HRS §302A-1112, 302A-1003)

§8-19-21 교내에서 발생한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행위 보고의 실패; 그에 대한 결과. (a) 교육부 교육감은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발생한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행위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책임 교사, 임원, 또는 기타 교육부 직원에게 징계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연간 서면 통지문을 모든 학교와 사무국에 배포해야 한다. 징계 조치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구두 경고;
- (2) 서면 경고;
- (3) 무급 휴직;
- (4) 강등; 또는
- (5) 해고.

(b) 섹션 8-19-19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교사, 임원, 또는 기타 교육부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c) 교내, 또는 기타 교육부 건물 내, 교육부 교통수단 내, 또는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장소에서 발생한 A 등급 또는 B 등급 위반 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임원, 또는 기타 교육부 직원은 주법 또는 교육부 규정 및 절차, 또는 해당하는 단체 교섭 협약 규정에 따라 그러한 징계 조치에 항소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Eff 9/1/82; am and ren §8-19-13,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am and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302A-1002) (Imp: HRS §§302A-1112, 302A-1002)

서브챕터 6

경찰 조사 및 체포

§8-19-22 학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교내 경찰 수사. (a) 경찰관은 학생을 조사할 목적으로 학교에 입장할 수 있다. 경찰관은 학교에 도착한 후 학생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학생을 조사하는 것이 허가되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부모에게 경찰관의 조사

사실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출석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 조사는 교장 또는 담당자가 학부모에게 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 또는 학부모에게 위의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학부모가 출석을 거부한 상황, 또는 통지가 이루어진 후 합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부모가 경찰 조사를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 모두에서 수행될 수 있다.

(b) 교장 또는 담당자는 경찰관에 의해 배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 조사 동안 현장에 출석해야 한다.

(c) 만약 학생이 체포된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섹션 8-19-24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Eff 9/1/82; am and ren §8- 19-14,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23 학교 무관 위반 행위에 대한 교내 경찰 수사. (a) 경찰관은 학교에 연락하여 방문의 성격과 상황을 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찰관은 학교에 도착한 후 학생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b) 조사가 수행되기 전,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부모에게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출석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조사는 학부모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은 즉시 수행될 수 있다. 만약 조사의 본질이 학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 학생에 대해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 학대나 기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본 서브섹션의 통지 및 승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c) 교장 또는 담당자는 일지를 작성하고 학생의 이름, 경찰 조사 날짜, 경찰관 이름과 배지 번호, 및 가능할 경우 경찰 보고서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d) 만약 학생이 경찰에 체포된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섹션 8-19-24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Eff 9/1/82; am and ren §8-19-15, 5/23/86; am and comp 7/19/93; am and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24 교내에서 경찰의 체포. 경찰은 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생은 교장실로 호출하여 경찰관이 대기 중인 체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 학생의 체포를 위해 도착하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ff 9/1/82; am and ren §8-19-16,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awaii Const. Art. X, §3; HRS §§302A-1101, 302A-1112)

서브챕터 7

기물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

§8-19-25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 (a) 학생이 공립 학교 건물, 시설, 또는 운동장에 대한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러한 학생 또는 학부모는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다. 기물 파손 행위가 그러한 학생에 의해 범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원상회복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b) 본 챕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는 학교 재산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c) 만약 학생이 기물 파손 행동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원상회복 절차는 본 챕터에서 규정된 징계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그리고 조사 작업을 수행하는 교장 또는 담당자가 그러한 학생은 본 챕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작되어야 한다. [Eff 5/23/86;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302A-1153)

§8-19-26 기물 파손에 적용되는 절차. (a) 교장 또는 담당자가 공립 학교 건물, 시설 또는 운동장에 대해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b) 만약 기물 파손 행위가 본 챕터에 따라 학생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행동에 해당된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섹션 8-19-7, 8-19-8, 8-19-9, 및 8-19-10 규정에 따른 조사에 본 챕터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상황에 관한 판단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원상회복과 관련된 추가 조치는 징계 조치가 결정되고 항소 절차가 소진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

(c) 조사 완료 후, 교장 또는 담당자가 학생이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 면담 일정을 정해야 한다. 면담 출석자는 교장 또는 담당자, 학생 및 학부모로 제한되어야 한다.

(d) 면담을 알리는 사전 서면 통지문은 교육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우편으로 학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도 원상회복 책임을 지도록 요구될 수 없다. 통지문을 통해서만 조사 결과와 면담 날짜,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문은 면담 날짜로부터 최소한 십오일 이전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면, 통지문은 학부모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서면 통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화와 같은 다른 형태의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 학부모는 통지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칠일 이내에 통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 (2) 통지문에 제공된 면담 날짜는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새로운 면담 날짜를 정해주기를 요청한다면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면담 일정 재조정 요청은 통지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칠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3) 손상 정도가 \$3,500를 초과하지 않는 사례의 경우에는 면담 및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원상회복에 대한 서면 합의를 작성하여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 서면 합의서는 손상 정도가 \$3,5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체결될 수 있다.
- (e) 학부모가 지정된 시간 이내에 통지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 (1) 교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이 제공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학교 또는 학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면담 날짜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또는
 - (2) 학부모에게 교장 또는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변론을 할 기회를 알리기 위한 통지문이 제공되었으나, 그러한 통지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해당 사안은 추가 조치를 위해 교장 또는 담당자로부터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회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f) 면담은 다음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1) 면담에 출석한 당사자들은 교장 또는 담당자, 학생 및 학부모여야 한다. 기물 파손 행위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 또는 담당자, 학생 및 학부모 이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이 면담에 출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2) 면담 장소에서 기물 파손 행위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 또는 담당자는 조사 결과물과 원상회복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 (3) 만약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된 금액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동의한다면, 손상 정도가 \$3,5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교장 또는 담당자, 학생 및 학부모는 교육부 양식을 사용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러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합의를 작성 및 체결해야 한다. 원상회복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금전적 원상회복을 포함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손상 정도가 \$3,500를 초과한다면, 해당 사안은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회부되어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회부하여 추가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 (4) 원상회복이 완료되면, 조사 및 면담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는 삼 년 동안 학교에 보관되어야 한다. 조사, 면담 및 부과된 조치에 관한 정보는 그 어떤 것도 해당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에게 공개될 수 없다.
 - (5) 서면 합의서가 체결되었지만,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합의서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해당 사안을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회부할 수 있다. 복합 구역 교육감은 사안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검찰총장에게 회부하여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 (6) 만약 학생 및 학부모가 교장 또는 담당자가 제시한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조사 및 면담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를 복합 구역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사안과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와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추가 조치를 위해 검찰총장에게 회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손상 정도가 \$3,500를 초과한다면, 본 사안은 추가 조치를 위해 검찰총장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Eff 5/23/86; am and comp 7/19/93; comp 5/19/97; comp 2/22/01; am and comp 9/10/09; comp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12, 302A-1153)

§8-19-27 폐지[R 2/22/01]

§8-19-28 폐지[R 2/22/01]

§8-19-29 폐지[R 2/22/01]

서브챕터 8

차별, 학대(성적 학대 포함), 불링 및/또는 보복에 대한 민원 절차 및 조사

§8-19-30 민원 절차. (a) 교육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경우 차별로 인해 민원 제기자/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배상하기 위해 섹션 8-19-2에 정의된 법적으로 보호되는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또는 불링 행위를 중단하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민원 또는 본 챕터 규정에 해당되는 주장에 근거한 민원은 다음 인물에 의해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 (1)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또는 보복을 경험한 학생;
- (2)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또는 보복을 목격한 학생;
- (3) 학생에 대한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또는 보복에 관해 알고 있거나 이를 목격한 학부모, 법적 보호자, 교육 대변인, 또는 대리인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 (4) 학생에 대한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또는 보복을 목격했거나 이에 관해 알고 있는 직원, 스태프, 또는 자원봉사자.

(c) 본 챕터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은 Hawaii 주 행정 규칙 타이틀 8, 교육부 챕터 19에 포함된 민원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민원은 또한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Hawaii 주 행정 규칙 타이틀 8, 교육부 챕터 19에 포함된 민원 양식에 접근할 수 없거나 본 양식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개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아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1) 피고의 이름 또는 신원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피고에 관한 설명;

- (2)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또는 보복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날짜(들);
- (3) 주장된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또는 보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한 사실적 설명 및 해당하는 경우 민원의 근거가 된 보호 규정;
- (4) 해당하는 경우 상해 또는 피해에 관한 설명; 및
- (5) 해당하는 경우 주장된 행동을 기록한 첨부 문서.

(d) 서면으로 작성된 민원은 교사나 직원, 교장, 교감, 복합 구역 교육감, 또는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에 제출할 수 있다. 구두 민원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교사나 직원, 교장, 교감, 복합 구역 교육감, 또는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에 제출할 수 있다.

(e) 교장 또는 담당자, 또는 복합 구역 교육감은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과 상담을 통해 민원을 검토하여 주장된 사실이 기소 가능한 차별, 학대(성희롱 포함), 불링 또는 보복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본 서브챕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적절한 사무국 또는 행정관에게 검토를 위해 회부되어야 한다.

(f) 민원이 제출되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 (1) 섹션 8-19-31에 따라 즉시 조사를 시작한다; 또는
- (2)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 조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비공식 절차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 비공식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러한 비공식 절차를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그럴 경우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된다.

비공식 절차를 통한 해결은 다음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1) 주장이 너무나 심각하여 민원 제기자/피해자 또는 기타 다른 인물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2) 사건이 형사 고발로 이어진 경우;
- (3) 사건이 경찰 또는 아동 복지 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s) 신고와 관련된 경우;
- (4) 민원이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만연한 불링 또는 기타 심각한 형태의 차별과 관련된 경우;
- (5) 피고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
- (6) 당사자들 사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 (7) 그 이외에 상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만약 비공식 절차를 통한 해결이 적절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타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섹션 8-19-31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가 교장 또는 담당자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g) 당사자들은 교장, 교감, 복합 구역 교육감, 또는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에 즉각적인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장 또는 담당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요청 없이도 즉각적인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즉각적 중재는 교장 또는 담당자가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과 상담을 통해 고려해야 하며 즉각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교장 또는 담당자가 즉각적 중재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은 그러한 즉각적 중재 조치가 실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즉각적 중재 조치에 포함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조사, 증거 확인 및 결정 과정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Eff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01, 302A-1112; 5 U.S.C. §301, 42 U.S.C. §2000d et seq., 34 C.F.R. §100.9; 34 C.F.R. §101.11)

§8-19-31 조사. (a) 민원이 제기되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학교 수준에서 공정한 조사관(이하 “조사관”)을 지정하여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학부모에게 최대한 이른 시점에서 알리려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교장 또는 담당자가 학부모에게 연락할 수 없다면,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 및 완료할 수 있다.

민원 제기자/피해자 및 피고에게는 제기된 민원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증인 이름 목록을 제공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믿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b) 조사관이 필요한 관련 정보와 문서를 수집하면, 해당 조사관은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고 기록하며, 당사자와 증인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유죄 및 무죄 입증 증거를 포함한 확인 가능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고 사례별로 해당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및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면, 조사관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준비하고 차별, 학대, 불링 또는 보복을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민원 제기자/피해자 및 교육부 커뮤니티에 끼친 영향을 배상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관은 그러한 조사 결과를 교장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장 또는 담당자는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들이 섹션 8-19-6(a) 또는 8-19-13(a)에 따라 금지된 학생 행동을 구성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취해질 징계 조치는 사례별로 섹션 8-19-5부터 8-19-13까지 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항소 권리가 포함된다.

(c) 조사를 종결할 시, 교장 또는 담당자는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과 상담을 통해 조사와 연관된 개인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교장 또는 담당자는 그러한 배상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 민원 제기자/피해자에게는 주장된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되었는지와 조사 결과, 해당하는 경우 제공된 배상,

및 그 외 민원 제기자/피해자와 직접 연관되는 교육부 시행 조치 등을 알리는 서면 통지문이 제공된다. 피고에게는 주장된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되었는지와 조사 결과, 해당하는 경우 제공된 배상, 및 그 외 민원 피고와 직접 연관되는 교육부 시행 조치 등을 알리는 서면 통지문이 제공된다.

(d) 조사관은 해당 사안에 조사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수업일 오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조사가 오일 이상 지속된다면, 조사관은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지연 사실을 통지하고 지연 사유와 조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의 길이를 설명해야 한다. [Eff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Imp: HRS §§302A-1101, 302A-1112; 5 U.S. C. §301, 42 U.S.C. §2000d et seq., 34 C.F.R. §100.9; 34 C.F.R. §101.11)

§8-19-32 지속적 조사. 교육부는 정식 민원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민원이 철회되더라도 본 서브챕터 위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Eff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8-19-33 언어 지원, 문서 작성 지원, 또는 기타 장애인 지원. 민원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개인에게 언어 지원이나 문서 작성 지원이 요구된다면 그러한 지원은 교육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지원 서비스(들)가 요구되는 장애인이 민원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참여한다면 그러한 지원은 교육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Eff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8-19-34 보복 금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인물에게 보복 및 보복성 학대를 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Eff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8-19-35 기타 구제책을 구할 권리. 본 챕터의 그 어떤 조항도 민원 제기자/피해자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보장된 다른 구제책을 구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민원 제기자/피해자는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1) 본 챕터에 따라 민원을 제출하지 않고;
- (2) 본 챕터에 따라 민원이 제출되었거나 사건이 신고된 동시에;
- (3) 본 챕터에 따라 제출된 민원 또는 신고된 사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 (4) 본 챕터에 따라 제출된 민원 또는 신고된 사건에 관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Eff NOV 17 2019] (Auth: HRS §302A-1112)

2. 폐지될 자료는 출처에 관한 메모와 기타 메모를 제외하고 괄호로 표시하여 삭제되었다. 새로 작성된 자료는 밑줄로 표시되었다.

3. 이번 개정 및 편찬을 반영하는 출처에 관한 메모와 기타 메모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추가된 사항은 밑줄로 표시되지 않았다.

4. Hawaii 주 행정 규칙 8-19에 대한 이번 개정 및 편찬 사항은 부지사 사무국에 등재된 날로부터 십일 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본인은 전술된 규정은 _____ 에 채택되었고 부지사 사무국에 등재된 Hawaii 주 개정 법령 섹션 91-4.1 규정에 따라 Ramseyer 형식으로 초안이 작성된 규칙의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형식에 대한 승인

검찰 부총장

CATHERINE PAYNE,
교육위원회 위원장

David Y. Ige
주지사
Hawaii 주

날짜: _____ 2019-11-07

2019년 11월 7일 오후 4:10

본문(사)자본

등재

